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9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06.

발 의 자: 김승원・남인순・도종환

박광온 · 서영석 · 오영환

이성만 · 임호선 · 조승래

주철현 • 한병도 • 홍기원

의원(12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(國政)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」이 제정되었음.

그러나,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 국정 참여의 증대로 인하여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고, 정보공개정책 등을 심의·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그 권 한을 강화하는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.

이에 내부·외부 인사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하게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, 제착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 또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

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,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항, 제22조, 제2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 설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3항 본문 중 "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2분의 1은 해당"을 "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해당"으로 하고, "위촉하여야"를 "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외부 전문가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 4항 중 "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"를 "위원 중에서 선출한다"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- 3.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 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 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.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국무총리"로 한다. 제23조제1항 중 "9명"을 "1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 중 "5명"을 "6명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"행정안전부장관이"를 각각 "국무총리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임명·위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제3조(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・②	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심의회의 <u>위원장을 제외한</u>	③위원은 국가기관
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	등의 장이 소속 공무원, 임직원
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	<u>또는 해당</u>
위촉하되, 그 중 2분의 1은 해	
<u>당</u>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	<u>지</u>
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	명하거나 위촉하되, 외부 전문
가진 외부 전문가로 <u>위촉하여</u>	가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
<u>야</u>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	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
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	록 하여야
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	
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	
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,	
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	
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	
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	4
규정된 <u>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</u>	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	
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.	
⑤・⑥ (생 략)	⑤・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2조의2(위원의 제척・기피・

- 회피)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 항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 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 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

제22조(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) | 제22조(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) -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 정하기 위하여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~ 4. (생 략)

제2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 제2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

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 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 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 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 다.

-----국무총리-----______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1명을 포함한 <u>9명</u> 의 위원으로	<u>11명</u>
구성한다.	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	②
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	
원장을 포함한 <u>5명</u> 은 공무원이	<u>6명</u>
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	2
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<u>행</u>	<u>국</u>
<u>정안전부장관이</u> 위촉하는 사	<u> 무총리가</u>
람	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	3
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	
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	
천한 사람으로서 <u>행정안전부</u>	<u>국무총리가</u>
<u>장관이</u> 위촉하는 사람	

③ ~ ⑥ (생 략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